

#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69
----------	------

발의년월일 : 2005. 8.  
발 의 자 : 권영숙 의원  
외 5인

### □ 제안이유

-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2005. 1. 2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 규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 □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
-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한다.</p>	<p>〈삭 제〉</p>

(全文改正 94·3·16)

第37條 (行政事務處理狀況의 보고와 質問應答) ①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관계公務員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行政事務의 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관계公務員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答辯하여야 한다. 다만, 特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출석·答辯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③第1項 또는 第2項에 의하여 地方議會 또는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答辯할 수 있는 관계公務員은 條例로 정한다.

第37條의2 (議會規則) 地方議會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本條新設 94·3·16)

#### 第4節 召集과 會期

第38條 (定例會) ①地方議會는 매년 2回 定例會를 개최한다.

②定例會의 集會日 기타 定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全文改正 99·8·31)

第39條 (臨時會) ①總選舉 후 최초로 集會되는 臨時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地方議會議員 任期開始日부터 25일이내에 召集한다. <改正 94·3·16>

②地方議會議長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이내에 臨時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臨時會의 召集은 市·道에 있어서는 集會日 7일전에,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集會日 5일전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0條 (附議案件의 公告)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地方議會에 附議할 案件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이를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會議中 긴급한 案件을 附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1條 (開會·休會·閉會와 會議日數) ①地方議會의 開會·休會·閉會와 會期는 地方議會가 議決로 이를 정한다.

②삭제 <2005·1·27>

---

③年間 會議總日數는 定例會 및 臨時會를 合하여 市·道에 있어서는 120日, 市·

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80日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89·12·30, 94·3·16, 99·8·31>

### 第5節 議長과 副議長

第42條 (議長·副議長의 選舉와 任期) ①地方議會는 議員중에서 市·道의 경우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市·郡 및 自治區의 경우 議長과 副議長 각 1人을 無記名投票로 選舉하여야 한다.

②議長과 副議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43條 (議長의 職務) 地方議會의 議長은 議會를 代表하고 議事를 整理하며, 會議場내의 秩序를 유지하고 議會의 事務를 監督한다.

第44條 (議長의 委員會 출석과 發言) 地方議會의 議長은 委員會에 출석하여 發言 할 수 있다.

第45條 (副議長의 議長職務代理) 地方議會의 副議長은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46條 (臨時議長) 地方議會의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臨時議長을 選出하여 議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

第47條 (補闕選舉) ①地方議會의 議長 또는 副議長이 關位된 때에는 補闕選舉를 실시한다.

②補闕選舉에 의하여 當選된 議長 또는 副議長의 任期는 前任者的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48條 (議長등 選舉時의 議長職務代行) 第42條第1項·第46條 또는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舉를 실시하는 경우에 議長의 職務를 수행할 者가 없는 때에는 出席議員中 年長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49條 (議長不信任의 議決) ①地方議會의 議長 또는 副議長이 法令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職務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議會는 不信任을 議決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②第1項의 不信任議決은 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發議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다. <改正 94·3·16>

③第2項의 不信任議決이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副議長은 그 職에서 解任된다. <改正 94·3·16>